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0023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박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은진(국선)
판 결 선 고 2026.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6.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26.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¹⁾

1) 공소장에는 위 확정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확정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
한 전과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12. 10. 21:42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사단법인 D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E 노래를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재생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연함으로써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으로 이를 추가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²⁾,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지원 _____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친고죄의 적용이 배제된다.